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)
-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혁신기술 분야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신설)
-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일반채권시장 매매수량단위 변경 및 조성실적 평가제도 개선)
- 라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미결제현황 통지서상 미결제사유 추가)
- 마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시 추가요건 기준 변경)
- 바. 주식·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상품의 배정방식 개선)
- 사.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(채무증권전문회원의 통신회선 배정기준 완화 근거 마련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5/12/29 개정 · 2025/12/3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정부의 녹색채권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을 연장하기 위함
 - (녹색채권)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제정한 「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(Green Bond Guidelines)」을 준거원칙으로 하는 채권

2) 주요 내용

-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(별표 10 제4호 가목 7))
 - 한국형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시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

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5/12/30 개정 · 2025/12/3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‘코스닥 시장 신뢰 + 혁신 제고 방안’(2025.12.19, 관계기관 합동) 관련 조치로서 인공지능(AI) 산업 등 혁신기술기 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- 혁신기술 분야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신설(별표 7의 제3호·제4호·제5호)
 - AI 산업, 에너지(신재생·ESS(Energy Storage System)) 산업, 우주 산업에 대해 각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마련

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12/24 개정·2026/1/1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채권시장 활성화와 안정적 시장운동을 위해 매매제도 및 조성제도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일반채권시장 매매수량단위 변경(제66조)
 - 분할호가 과다제출 방지 통한 안정적 시장운동을 위해 매매수량 단위를 액면 1,000원에서 액면 10,000원으로 상향
- 국채전문유통시장 호가가격제한 범위 변경(제79조)
 - 호가가격제한 범위를 지표 및 선매출 종목은 발행만기 기준으로 10년 이하는 5%, 10년 초과는 10%로 하고, 그 외의 종목은 잔존만기 기준으로 10년 이하는 10%, 10년 초과는 20%를 적용

[국채전문유통시장 호가가격제한 범위 개선]

구분		기 존		구분		개 정	
정규장	지표	발행만기 10년 이하	20%	지표* · 선매출	발행만기 10년 이하(물가채 포함)	5%	
		발행만기 10년 초과 (물가채 포함)	30%		발행만기 10년 초과	10%	
	비지표	발행만기 10년 이하	30%	비지표	잔존만기 10년 이하(스트립 포함)	10%	
		발행만기 10년 초과			잔존만기 10년 초과(스트립 포함)	20%	
		스트립(원금이자분리)					
	신고매매(WIT 신고매매 포함)		없음		신고매매(WIT 신고매매 포함)		없음
협의매매(RFQ)		없음		협의매매(RFQ)		없음	

* 50년물 제외(비지표에 포함)

□ 일반채권시장 조성실적 평가제도 개선(제99조의10 및 별표 4)

- 일반채권시장 조성업무 충실도 제고를 위해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 종목수 및 협의매매 참여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
 -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에서도 협의매매 실적 제외
- 조성호가 제출실적 배점은 25점에서 30점으로,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 배점은 50점에서 7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

[일반채권시장 시장조성 평가기준 개선]

기 존		개 정	
평가항목	배점	평가항목	배점
조성호가 제출실적	25	조성호가 제출실적	30
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	50	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	70
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 종목수	20	삭제	-
일반채권시장 협의매매 참여실적	5	삭제	-

□ 일반채권시장 조성대가 지급요건 강화(제99조의11)

- 시장조성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조성회원에게 대가가 지급되도록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요건을 현행 0.5%에서 1%로 변경
 - 개별 회원사 실적을 전체 거래실적 합계로 나누어 산출

라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12/29 개정 · 2026/1/1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결제현황 통지서에 미결제 사유를 추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미결제현황 통지서상 미결제사유에 ‘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’ 추가(안 [업무서식1] 미결제현황 통지서)
 - 결제시차 발생에 따른 미결제에 경우 ‘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’을 미결제 사유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함

3) 관련 시행세칙 개정

-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12/29 개정 · 2026/1/12 시행)

마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5/12/26 개정 · 2025/12/29 시행)**1) 개정 이유**

-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'초장기상승 및 불건전 요건'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요건 등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중 '초장기상승 및 불건전 요건'의 주가요건 기준 변경(제3조의3 제2항 제8호)
 - 단순 종목 주가상승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상승률(초과상승률 개념)을 기준으로 투자경고 지정예고 적출기준을 변경(투자경고 지정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함)
 - 투자경고 지정예고시 유가·코스닥시장을 포괄하여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제외하는 조건을 도입(제3조의3 제2항 제8호 라목 신설)
 - 투자경고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로 연장(제3조의3 제2항 제8호 다목)

바. 주식·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5/12/12 개정 · 2025/12/15 시행)**1) 개정 이유**

- 양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장조성자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주식선물 상품에 대한 배정방식 변경에 따라 시장조성자무 확대 대상 상품의 기준을 변경하고, 상품별 특성 및 거래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상품의 배정방식을 개선(제5조, 별표 2)
 - A그룹에 한정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각 시장조성자가 1개의 상품을 선택
 - 이 경우 각 상품당 시장조성자가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모든 A그룹 시장조성자가 각각 3개의 상품을 선택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반복
 - B그룹에 한정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각 시장조성자가 1개의 상품을 선택
 - 이 경우 각 상품당 시장조성자가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모든 B그룹 시장조성자가 각각 2개의 상품을 선택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반복

- 코스닥150옵션 결제월거래와 월요일 결제주거래 및 목요일 결제주거래별로 각각 분리하여 계좌를 신고하도록 명시 (제8조)
 - 코스닥150옵션의 경우에는 코스닥150옵션 결제월거래, 세칙 제5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른 월요일 결제주거래 (코스닥150옵션 월요일 결제주거래)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요일 결제주거래(코스닥150옵션 목요일 결제주거래)를 구분

- 시장조성실적 평가기준 개선(별표 4)
 - 시장조성상품으로 재선정된 코스닥150선물에 대한 시장조성 의무 기준을 명시
 - 개시호가지연시 부과되던 패널티를 없애는 대신, 일종의무이행비율을 상향하여 효율적인 시장조성 유도
 - 시장조성자에 대한 유동성 기여도 평가가 시장조성상품의 유동성 및 시장조성 난이도를 반영하여 시장조성자의 역량을 변별력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방식을 개선 등

- 시장조성의무 중간 조정에 대한 근거 명확화(별지 제3호 서식)
 - 시장조성 상품 · 의무종목 ·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
 - 거래소가 시장조성기간 중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조성 의무호가 제출간격 및 호가당 최소 수량을 변경하여 통보한 경우 시장조성자는 해당 통보에 따른 제출간격 이내 및 최소 수량 이상으로 시장조성 의무호가를 제출하여야 함

사.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(2025/12/15 개정 · 2025/12/1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채무증권전문회원(은행 등)의 통신회선은 이용 규모를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채무증권전문회원의 통신회선 배정기준 완화 근거 마련(제5조 제4항)
 - 참여시장 제한으로 사용량이 적은 채무증권전문회원에 대해서는 메인 1회선 및 백업 1회선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(기존) 메인 2회선 및 백업 1회선 배정 강제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